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05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이용선・김재원・송재봉

서미화 • 오세희 • 박지원

김남희 · 김성회 · 전용기

안태준 · 염태영 · 손명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,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,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%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그런데, 최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%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%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%로 완화되 었음(2025년 5월 시행).

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%에서 70%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10분의 8"을 "100분의 7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4분의 3"을 각각 "100분의 70"으로 하며, 같 은 조 제4항 중 "10분의 8"을 "100분의 7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가로	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	
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		
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		
등소유자의 <u>10분의 8</u> 이상 및	<u>100분의 70</u>	
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		
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		
설립을 위한 창립총회(이하		
"창립총회"라 한다)를 개최하고	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		
시장・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		
한다.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	<u>,</u>	
공동주택은 각 동(복리시설의		
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		
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)별		
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(공		
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		
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		
다)를,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		
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		
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		
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		
를 받아야 한다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
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	<u>=</u>
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7	섬
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2	<u>'</u> }
동(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	븩
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	+
의 동으로 본다)별 구분소유자	아
의 과반수 동의(공동주택의 2	<u>'</u> }
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였	2]
경우는 제외한다)와 주택단계	۲]
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<u>4분의</u>	3
이상 및 토지면적의 <u>4분의</u>	3
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팀	반
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저	H)
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	뉟
시장・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	ب ار
한다.	

③ (생 략)

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시장・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한다.

②	
	<u>100분의 7</u>
<u>0</u>	<u>100분의</u>
<u>70</u>	
③ (현행과 같음)	
4	
	-100분의 70-